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171(2023.4.9.)호.
2. 우리 부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특정매개체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공고(붙임1, 2) 하였습니다.
3. 전라남도 및 '23.4월 이후 발생 시·도에서는 붙임의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축산 관련 차량의 소유자(운전자)와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고(붙임3 참조) 및 명령서 발부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라남도 및 '23.4월 이후 발생 시·도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가금 관련 축산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한 안내문구가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공고 제2023-150) 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1부.
3.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 공고안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주무관 조현준 사무관 김정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3. 4. 10.
지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2023. 4. 10.) 접수
3175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hjcho324@korea.kr / 대국민 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